

Policy

제1조 (목적)

본 계약은 패스트캠퍼스 주식회사(이하 “학원”이라 합니다)와 수강신청인 사이에 강좌 및 수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2조 (관계법령)

본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따릅니다.

제3조 (수강료등)

- 수강신청인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학원에 수강료 전액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단, 수강신청인은 학원과 협의하여 수강료 일부를 예치하고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제2항의 레벨테스트를 실시하기 전까지 학원에 미지급 수강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.
- 수강신청인은 희망하는 경우에 선택에 따라 레벨테스트를 별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.

제4조 (수강증)

- 수강신청인은 학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강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. 단, 학원이 수강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.
- 수강신청인이 수강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학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.
- 수강신청인은 수강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부당하게 사용해서는 안되며,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학원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제5조 (강의일시 및 강사)

- 강의는 원칙적으로 매월 ___주, 주 ___회, 총 ___회로 편성됩니다. 다만, 수강신청인은 학원과 협의하여 강의일시를 연기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강의일시의 변경은 본 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학원의 일정상 강이가 가능한 시간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.
- 수강신청인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1회차 강의와 레벨테스트 1회를 수강하여야 합니다. 수강신청인의 일정 변경으로 인하여 위 기한 내에 1회차 강의 수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위 기한의 경과로써 1회차 강의 수강이 실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.
- 수강신청인은 1회차 강의 수강일(제2항에 따라 수강이 간주된 경우를 포함)을 기준으로 매 4주 (이하 “단위기간”이라 합니다)마다 최소 ___회 이상의 강의를 수강하여야 합니다. 수강신청인의 일정 변경으로 단위기간 내에 ___회 미만의 강의만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단위기간의 경과로써 실제 실시된 강의 횟수와 무관하게 해당 단위기간 동안 총 ___회의 강이가 실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.
- 수강신청인은 강의일시를 연기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예정된 강의일시로부터 ___일 전까지 사전에 학원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. 위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예정된 강의일시에 수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해당 회차 강이가 실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.
- 학원은 강사의 사망, 질병, 귀국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강신청인에 대하여 사전에 통지하고 강의일시 또는 강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제6조 (휴강)

- 학원의 휴강일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
 - 공휴일
- 수강신청인은 학원의 휴강일로 강의일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.

제7조 (수강신청의 철회)

- 수강신청인은 1회차 강의 수강 전까지 수강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
- 수강신청인이 수강신청을 철회한 경우에 수강증을 학원에 반환하여야 하고, 학원은 수강신청인이 지급한 수강료를 환급합니다.

제8조 (계약의 해지)

- 수강신청인은 학원 등록 말소 등 학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수강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학원은 지급 받은 수강료 중 수강신청인이 이미 수강한(제5조에 따라 강이가 실시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하며, 이하 같음) 강의횟수/기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합니다.
- 수강신청인이 총 강의횟수가 8회 이하인 강의를 수강한 후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학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수강신청인에게 반환합니다.
 - 수강신청인이 수강한 강의 횟수가 총 강의 횟수/기간의 1/3 이하인 경우 : 수강료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
 - 수강신청인이 수강한 강의 횟수가 총 강의 횟수/기간의 1/2 이하인 경우 : 수강료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
 - 수강신청인이 수강한 강의 횟수가 총 강의 횟수/기간의 1/2을 초과하는 경우 : 반환하지 않음
- 수강신청인이 총 강의횟수가 8회를 초과하는 강의를 수강한 후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학원은 (i)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(주 2회, 8회 강의 기준, 이하 같음)의 반환대상 수강료(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의미함) 및 (ii)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수강신청인에게 반환합니다.
- 학원은 수강신청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학원이 반환하는 수강료는 제2항 및 제3항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.
 - 강사의 교육지도에 따르지 않으며 학원 내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
 - 품행이 불량하여 다른 수강자의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 -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잦고 수강을 태만히 하는 경우
 - 수강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

제9조 (손해배상)

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

제10조 (불가항력)

-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원은 임시휴강을 하거나 강의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수강신청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원은 제8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정한 금액을 수강신청인에게 반환합니다.
- 임시휴강을 하거나 강의를 중단한 기간은 강의를 연기한 것으로 봅니다.
-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상당 기간 지속되어 강의를 실시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원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제11조 (관할법원)

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합니다.